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1. . . (제 회)	

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보건복지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1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‘첫만남이용권’ 지원을 신설하는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률」이 개정(법률 제18580호, 2021. 12. 14. 공포, 2022. 4. 1. 시행)됨에 따라 ‘첫만남이용권’의 지급대상·방법·시기 및 지급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가. 첫만남이용권 지급대상 및 신청절차(안 제1조의2제1항)

첫만남이용권은 출생아동 또는 출생아동의 보호자에게 1회 지급하며, 이용권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지급 신청서 등을 출생아동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기초지자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함.

나. 지급방법 및 사용기한(안 제1조의2제6항)
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이용권 지급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출생아동의 보호자에게 이용금액을 전자적으로 기록하여 신용카드,체크카드 등의 형태로 발급하도록 하고, 이용권은 출생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할수 있도록 함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2022년 예산 반영(국비 3,731억원, 지방비 1,771억원)

다. 합 의 : 2021. 12월말 관계부처 협의 예정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1. 12. ~ 2022. 1월) 예정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사전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조의2(첫만남이용권의 지급 대상 등) ①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첫만남이용권(이하 “이용권”이라 한다)은 출생아동 또는 출생아동의 보호자에게 1회 지급한다.

②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이용권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첫만남이용권 지급 신청서(사회보장급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공통서식(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))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(사본을 포함한다)를 첨부하여 출생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주소지 관할 지역이 아닌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이 그 신청 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해당 서류를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지체없이 이송하여야 한다.

1. 주민등록증

2. 자동차운전면허증

3. 장애인등록증

4. 여권

5. 그 밖에 이용권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
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서류
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「민법」 제855조의2에 따른 인지의 허가청구 등 소송절차(비송사건 절차를 포함한다)를 거치는 경우 등에 대해 신청방법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.

④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출생아동의 양육여부, 보호자의 자격여부 등 이용권 지급의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이용권의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.

⑤ 제4항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그 결정 내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이용권지급신청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.

⑥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이용권 지급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출생아동의 보호자에게 이용금액을 전자적으로 기록하여 신용카드, 체크카드 등의 형태로 발급한다. 다만, 출생아동이 「아동복지법」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이나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용권을 현금으로 지급한다.

⑦ 이용권은 아동의 출생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한다. 사용기간 안에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은 소멸된다.

⑧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이용권의 지급 등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제29조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.

⑨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용권의 신청 등 서식, 신청방법,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이용권 사용기한 특례)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동으로서 이 영 시행 전의 출생아동의 경우 제1조의2제7항에 따른 사용기한은 이 영 시행일부터 기산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1조의2(첫만남이용권의 지급 대</u> <u>상 등) ① 법 제10조제6항에 따</u> <u>른 첫만남이용권(이하 “이용권”</u> <u>이라 한다)은 출생아동 또는 출</u> <u>생아동의 보호자에게 1회 지급</u> <u>한다.</u> <u>②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이용</u> <u>권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</u> <u>첫만남이용권 지급 신청서(사회</u> <u>보장급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</u> <u>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</u> <u>서식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</u> <u>하는 공통서식(전자문서로 된</u> <u>신청서를 포함한다))에 다음 각</u> <u>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</u> <u>류(사본을 포함한다)를 첨부하</u> <u>여 출생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</u> <u>관할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</u> <u>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</u> <u>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주</u> <u>소지 관할 지역이 아닌 특별자</u> <u>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</u> <u>수·구청장이 그 신청 서류를 제</u> <u>출받은 때에는 해당 서류를 주</u>

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지체없이 이송하여야 한다.

1. 주민등록증

2. 자동차운전면허증

3. 장애인등록증

4. 여권

5. 그 밖에 이용권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서류
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「민법」 제855조의2에 따른 인지의 허가청구 등 소송절차(비송사건 절차를 포함한다)를 거치는 경우 등에 대해 신청방법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.

④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출생아동의 양육여부, 보호자의 자격여부 등 이용권 지급의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이용권의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.

⑤ 제4항에 따른 결정을 한 경

우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그 결정 내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이용권지급신청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.

⑥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이용권 지급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출생아동의 보호자에게 이용금액을 전자적으로 기록하여 신용카드, 체크카드 등의 형태로 발급한다. 다만, 출생아동이 「아동복지법」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이나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용권을 현금으로 지급한다.

⑦ 이용권은 아동의 출생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한다. 사용기간 안에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은 소멸된다.

⑧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이용권의 지

급 등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
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
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
률」 제29조에 따른 한국사회보
장정보원에 위탁하며 예산의 범
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보
조할 수 있다.

⑨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
정한 사항 외에 이용권의 신청
등 서식, 신청방법, 사용방법 등
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
복지부장관이 정한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2 - 3399